

#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1981. 05. 07 개정 1990. 04. 17  
개정 1982. 06. 23 확인 1993. 07. 31  
개정 1984. 01. 01 개정 1995. 07. 07  
개정 1984. 10. 04 개정 1997. 03. 15  
개정 1986. 04. 07 개정 1997. 12. 01  
개정 2001. 01. 08  
개정 2001. 03. 23  
개정 2004. 07. 30  
개정 2005. 02. 24  
개정 2005. 07. 29  
개정 2006. 03. 17  
개정 2007. 03. 16  
개정 2011. 03. 25  
개정 2012. 03. 30  
개정 2017. 05. 30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두산에너지빌리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권한)

-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2 장 구 성

####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의장)

- ①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의 순위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 6 조(이사회 의 개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 7 조(소집권자)

-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재적 이사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사항, 회의소집 희망일자 등을 명시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10 일 이내에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제 2 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7 조 2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부회장,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8 조(소집절차)

의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 개최 직전일까지 서면, 구두, FAX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9 조(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부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사업계획 및 예산
  - 2) 중장기 사업계획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 5) 이사회운영 규정 개정
- 6)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규정 제.개정
- 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운영,폐지
- 8)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국내외 지점.법인(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 주주인 법인)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철수  
단,( I ) 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폐지, ( II ) 해외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 ( III ) 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 대상에서 제외함(2004.7.30)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
- 2)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3)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5)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6) 관계회사의 발행주식 및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제.개정
- 2) 상법 제 397 조의 2 의 승인사항 및 제 398 조의 거래

### 5. 기타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 2)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 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사항,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 11 조(이사회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삭제
-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12 조(삭제)

### 제 13 조(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제 14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 1 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의사록)

-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16 조(간사)

- ①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 ②간사는 회의의 소집통고·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